

인천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699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훈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10. 1.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소5736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기기 등의 렌탈 사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7. 10. 23. 안마의자 2대를 월 렌탈료
합계 181,800원에 렌탈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렌탈계약은 2017. 10. 21. 원고의 배우자 C이 피고의 지점에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계약체결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피고의 직원은 계약서 및 전산 고객정보에 원고와 C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는 한편, 원고가 기존에 이용 중이던 2건의 비데 렌탈계약에 이 사건
렌탈계약을 패키지로 결합하면서 원고의 휴대전화로 계약번호, 제품번호, 계약유형, 설치예정일,
담당직원 등이 기재된 문자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7. 10. 23.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라 C이 지정한 장소로 안마의자 2대를 설치하여
주었고, 이후 2017. 11.부터 2018. 10.까지 12개월간 합계 1,668,000원이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렌탈계약의 렌탈료로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렌탈계약은 C이 임의로 원고의 명의로 체결하고 원고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 안마의자를
설치받은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렌탈료
1,66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이 피고의 지점을 찾아와 이 사건 렌탈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렌탈계약의 안마의자 2대가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C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C은 이
사건 렌탈계약 당시 부부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렌탈계약에 앞서 원고의 휴대전화로 새로운
렌탈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는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렌탈계약을 포함한 렌탈료가 출금되고 있음에도 12개월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원고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비데 2개의 월 렌탈료는 42,800원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이 사건 렌탈계약의 렌탈료인 월 181,800원이 추가되었다면 원고는 렌탈료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C을 통하여 이 사건 렌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이대로, 판사 이혜선